

●경기북부병무지청공고 제2026-2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9월 22일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의 국내 체재기간 위반(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국내 체재)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 실시를 위해 연락이 닿은 병역의무자의 부와는 별도로 국외에 체류중인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이동준(1994.**.**)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국외주소 : 미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 2025. 3. 19. ~ 현재까지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이상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의무자뿐만 아니라 부 또는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 부과)					
청문실시	기관명	경기북부병무지청	부서명	병역판정검사과	담당자	양주성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호원동274-2)			전화번호	031-870-0232
	일시	2026년 12월 16일 14시 부터			장소	본관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성명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당사자는 희망 시 대리인 선임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과(031-870-0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